

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8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개정사유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에 합리성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“교육법시행령 제71조 및 제112조의8제3항”을 “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, 제73조, 제81조 및 제92조”로 함(안 제1조)
- “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제1항”을 “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2항”으로 함(안 제2조)

개정근거 :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, 제73조, 제81조, 제92조 및 제84조제2항

조 례 안 : 붙임

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교육법시행령 제71조 및 제112조의8제3항”을 “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, 제73조, 제81조 및 제92조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제1항”을 “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